

국회의원(서천호) 징계안

의안 번호	8634
----------	------

요구연월일 : 2025. 3. 4.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고민정
김남희 · 김병주 · 김성희
김용만 · 김용민 · 노종면
모경중 · 박민규 · 백승아
부승찬 · 송재봉 · 안태준
양문석 · 윤건영 · 이소영
전용기 · 정준호 · 정진욱
조계원 의원(22인)

주 문

국회의원(서천호)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는 2025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라며 헌정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폭력을 조장하고, 국가기관을 위협하는 폭언을 하였음. 이는 다수의 대중을 향해서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한 전복을 선동하는 발언이자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2항,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다. 국회의원 서천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자 국가적 기념일인 3·1절에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파괴하자는 폭언으로 역사적 상징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모욕하였음. 이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숭고한 헌법정신과 가치마저 부인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

라. 국회의원 서천호는 국가기관인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의 제2차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그 누구보다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심각한 위해 발언을 하였음.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

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까지 저버렸음. 이는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마. 국회의원 서천호는 “박살냅시다”,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해 집단적·물리적·폭력적 공격을 암시하며 겁박하는 발언을 하였음. 지난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판사와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경찰 다수가 중상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계엄군의 봉쇄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무형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등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제2의 내란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한 것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형법」 제115조(소요)에 해당함.

바. 이에 국회의원 서천호는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87조(내란),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115조(소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를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